건설업 관리지침 내용

〈개정연혁〉
´02.11.13(전면개정)
- 제3장3호나개정 및 동제3호의2신설 - ´03.02.19(일부개정)
- 별지1 제19조제2항단서신설 - ´03.03.19(일부개정)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제5장 및 별지4 기술자격변경 - ´03.08.19(일부개정)
- 별지1 제10조제3항신설 - ´05.05.31(일부개정)
´05.07.22(전문 개정)
- 별지5 기술자격취득자 및 재등록시 주기적 신고 변경 - ´06.2.20.(일부개정)

제1장 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건설업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시 · 군 · 구청장)로 한다.

2.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 · 합병 · 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 ·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3) 기존에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1)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개인기업의 경우도 (1)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다. 건설업등록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 ·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인정함

5.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기 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 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2.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유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시 · 도와 시 · 군 · 구청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 하고자 할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타 등록관청에 등록된 건설업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관청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3.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및 여타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라목의 방법에 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양수자 및 존속 법인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기술인력
(1) 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을 건설업 등록관청이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

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 · 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3) 위 (2)의 규정에 따라 3년간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관청은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제2장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이 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 · 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 · 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 · 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다. 시설 · 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5.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 · 합병 · 상속(이하 '건설업 양도 등' 이라 한다)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수인 · 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한다.

6.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7.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8.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0. 건설업등록의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지침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영업소소재지 변경, 양도, 합병 등

1.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처리권자는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시 · 군 · 구청)로 한다.

나. 처리권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에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 처리권자는 해당업체의 건설업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새로운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목에 의한다.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가. 처리권자는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시 · 도(시 · 군 · 구청)로 한다.

나. 처리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건설업등록관청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

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건설업 폐업신고제도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일은 2004년 12월 31일이며,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05.7.1.)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제도로 전환하며,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고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참조).

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이내 건설업 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 06.6.1 등록말소 →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 06.6.1 등록말소 →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 · 합병 · 상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주기적신고 기산일 및 수리방법

(1)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을 산정(폐업기간 포함)하되,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다만, 재등록시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해당년도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3년)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재조치함.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 등록 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법 제83조8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83조제2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2.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 가중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중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2)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 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 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3.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중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경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 처분횟수

- 최근 1년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 · 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 · 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 · 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전문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3. 이 지침 시행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02.11.13)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3.8.19)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92호) 공포 · 시행일(03. 8.21)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7.22)

이 지침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2.20)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 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기계설비 공사업	기 계				기계조립	기계조립다듬질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용 접			전기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 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제 관
			배 관		배관설비	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세라믹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도
	에너지			열관리	열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